

의안 번호	2396	<p>【울산광역시 중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】</p> 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심사보고서</h1>
----------	------	---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. 2. 28.(금) 이명녀 의원 외 8명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2. 28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3. 17.(월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이명녀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·심리적·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지원사업(안 제4조)
- 협력체계 구축(안 제6조)
- 비밀 누설의 금지(안 제7조)
- 사무의 위탁(안 제8조)

### 다. 근거법규

- 「모자보건법」 제3조
- 「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

### **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순정)**

- 경제적·심리적·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그 자녀의 안전한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
  
- 제반 규정을 검토한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.

### **4. 심사결과: 원안가결**

# 근거법규

## 「모자보건법」

-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한 조사·연구와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 「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」

- 제3조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직접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와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